



: 2018-08-1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21 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2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 고 인 A

검 사 박건욱(기소, 공판), 윤석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E, F
변호사 G, H
법무법인 I
담당변호사 J

판 결 선 고 2018. 8. 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 등의 신분관계】

피고인은 K경부터 L경까지 M 당선자의 N위원회 전문위원 및 M 정부의 O비서관실 선임 행정관, 2008. 6.경부터 2008. 12.경까지 국세청 P, 2008. 12.경부터 2009. 7.경까지 Q, 2009. 7.경부터 2010. 8.경까지 국세청 R을 지낸 후 2010. 8.경부터 2013. 3.경까지 S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T은 2009. 2. 12.부터 2013. 3. 21.까지 U으로 근무하며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의 예산 관리 및 집행 업무를 포함하여 국정원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던 사람으로서, 국정원은 예산 편성시 다른 국가기관과 달리 독립성, 비밀성이 특별히 보장되어 있고 U이 직접 그 책임 하에 소관 예산에 대한 회계검사와 직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감찰을 직접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상 '기타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기초사실】

가. 국가정보원법상 국정원의 직무범위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은 국정원의 직무를 '①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顛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②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③ 형법 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④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⑤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으로 정하고 있고, 특히 국외 정보와 달리 국내 정보의 경우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顛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한하여만 수집·작성 및 배포를 할 수 있



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1994. 1. 5.자 국가안전기획부법 개정에서 비롯되어 현행 국가정보원법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이어져 온 내용으로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의 국내사찰 의혹 논란이 발생하는 등 국가안전기획부의 권한남용과 인권침해 시비가 끊이지 않자 국가안전기획부가 국가정보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직무범위를 조정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

나. W·V 관련 T의 대응 지시 및 이행

T은 2009년 W·V의 서거 이후 추모 분위기가 지속되어 정부의 책임론이 부각되고, M 정부 이후 대북 강경책이 남북관계 경색으로 이어져 천안함 사건 및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비판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전(全)부서장회의 등을 통해, W·V이 추진한 햇볕정책이 북한의 위 두 사건을 초래하였다는 내용의 W·V 내지 전 정부에 대한 비난 심리전을 전개하여 M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바로잡을 것을 수차례 지시하였고, 실제로 국정원 X 산하 Y에서는 2010. 3.경 보수단체인 「Z」과 연계하여, W의 AA 수상 취소 요구서한을 「AB위원회」 위원장에게 발송하는 공작을 실행하는 등 정치관여 행위를 지속하여 왔다.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1) W 비자금 추적 관련 국정원, 국세청 간 역할 분담

T은 W 비자금 의혹을 파헤쳐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2009. 5.경 AC에게 W 가족들의 통장 사본과 계좌내역서를 주면서 조사를 지시¹⁾하는 한편, 2010. 3.

1) 이에 따라 AC은 2010. 1. 7. 국세청 R인 피고인을 면담하여 W 비자금 추적을 위해 AD(W의 장남)의 처남에게 차명 통장(1993.~1998. 총 입금액 64억 원)을 제공한 AE를 증여세 포탈 혐의로 국세청에서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경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국정원 자금을 지원해줄 테니 미국에 있는 W 비자금을 알아봐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당시 T의 위 요청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정치적 의도 하에 'W 비자금 추적'을 비밀리에 추진하려는 것인 데다 국세청의 역외탈세정보 수집기능 내지 시스템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것이므로 국세청 R인 피고인으로서 위 요청을 받아들여서는 아니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T의 위 요청에 따라 당시 국세청 AF인 AG에게 "국정원이 W 비자금을 알아봐달라고 돈을 준다고 한다. 관련 자료를 줄 수 있는 사람을 알아봐라"고 지시하였고, AG은 미국에 있는 '○○○'(이하 '해외정보원'이라 한다)와 접촉하며 "W 비자금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봐 줄 수 있느냐, 돈으로 보상하겠다"고 제안하여, 해외정보원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AG은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다시 T에게 이를 알려주어, T은 AC에게 피고인을 만나 W 비자금 추적에 대해 협의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을 만나러 간 AC은 피고인의 소개로 AG을 만나 협의하였고, AG은 그 자리에서 AC에게 "미국에 있는 해외정보원에게 대가를 주어야 하는데, 쪼개어서 주기로 하였다. 해외정보원이 요구할 때마다 제가 알려드리면, 국세청 직원인 것으로 행세하면서 해외정보원에게 돈을 주어라. 그러면 제가 해외정보원이 주는 정보를 전달해 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향후 해외정보원을 통한 W 비자금 추적 및 그 대가 지급과 관련하여 국정원과 국세청 간의 역할 분담 및 구체적인 진행 방식에 대해 공유하였다.

한편, 해외정보원의 첩보 내용은 '2004년경 W의 차남 AH의 측근인 AI 등 3명이 미국 뉴욕지역 AJ 건물을 매수하였던 자금이 W의 비자금과 관련되어 있고 그 매수대



금의 자금세탁 혐의가 미국 국세청(IRS)에 고발되었다는 취지인바, 이와 유사한 W 관련 비자금 의혹은 그 이전부터 수차례 제기된 바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실제로 확인된 것은 없었다.

2) W 비자금 추적 관련 국정원 자금 유용

AG은 전항과 같이 AC과 만나 협의한 후인 2010. 5. 중하순경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C에게 해외정보원이 비자금 추적 협조에 대한 대가로 활동비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요구한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AC은 T의 승인 하에 AK 등을 통해 국정원 자금에서 현금 3,500만 원을 마련한 후 보좌관인 AL에게 건네주면서 AG이 알려준 해외정보원의 처제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AL은 그 무렵 서울 강남구 AM아파트 101동 405호 해외정보원의 처제 집 앞에서 그녀에게 W 비자금 추적 협조 대가로 3,5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 등과 공모하여 국고에 해당하는 국정원 자금 3,500만 원을 국정원의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W 비자금 추적 명목'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5. 20.경부터 2012. 3. 26.경까지 모두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35,000,000원 및 47,000 USD를 횡령하여 국고에 손실을 입혔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T은 2011. 9.경 W 비자금 추적 진행 상황을 개요도(일명 AN 공작 요도)로 정리한 AO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후 당시 S인 피고인에게 W 비자금 추적에 대한 국세청의 협조를 재차 독려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T에게 "해외에서 정보를 구하려고 해도 정보원들에게 지급할 돈이



없다"며 활동비 명목으로 자금 지원을 요구하였고, T은 피고인의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여 AO에게 "A을 찾아가서 비자금 추적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구해라. 그리고 그쪽에서 필요한 자금 10만 달러 정도를 지원해 줘라"고 지시하였다.

AO은 T의 지시에 따라 2011. 9. 26.경 AP 등을 통해 국정원 자금에서 현금 1억 2,000만 원(당시 미화 10만 달러에 해당하는 한화)을 마련한 후, 2011. 9. 말경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있는 국세청 청사 내 AQ에서 AG이 배석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AN 공작 요도를 이용하여 W 비자금 추적 진행상황을 브리핑한 다음, 피고인에게 현금 1억 2,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S의 활동자금으로 전달하고, 피고인은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의 직무에 관하여 1억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

1) 피고인은 T으로부터 W의 비자금(이하 'W 비자금'이라 한다)을 추적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단지 AG으로부터 그와 같은 국정원의 협조 요청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서 이를 승인하였을 뿐이므로 T과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

2) 피고인은 국정원의 협조 요청에 응하여 역외탈세 추적 업무의 일환으로 W 비자금을 추적하는 것으로 알았고, 그러한 업무가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벗어난다거나 T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협조를 요청하였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여, 국고에 손실을 입힌다는 범의가 없었다.

3) W 비자금 추적 사업에서의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사업 전반에 대한 장악력 등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는 국고 횡령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와 이를 통한 기능적 행



위지배가 존재하지 않는다.

4) 공소사실상 국고 손실액 중 일부가 해외정보원에게 실제로 전달되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1) 피고인은 2011. 여름경 AO을 만나 한 차례 W 비자금 추적과 관련한 설명을 들은 적이 있을 뿐이고, AO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횡령 범행의 공동정범이 다른 공범으로부터 횡령금을 수수한 것에 대하여 횡령죄와 동시에 뇌물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3) 피고인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W 비자금을 추적하는 대가로 금원을 수수하였다면 이는 S의 직무에 관하여 수수한 것이 아니다.

4)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정보원들에게 지급할 활동자금을 받았다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뇌물죄가 성립할 수 없다.

3.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

1) 증거관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공판 및 수사 과정에서의 AG, AR, AS, AT, AU의 각 진술과 AO, AC, T의 각 일부 진술, 수사기관에서의 정하진의 진술과 AK, AV, AW의 각 일부 진술, AX 사업비 집행내역(증거기록 2551쪽), 가장체 수익금 특명공작 활용방안 검토(증거기록 2543쪽), T 말씀자료(증거기록 4510-20쪽 이하), 각 출력기록(증거기록 7474쪽 이하) 등이 있다.

이하에서는 W 비자금 추적 사업에서의 국정원과 국세청의 관계, 피고인의 역할



과 관여 정도 등을 밝힌 다음, 이를 토대로 위에서 든 증거들으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뒷받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먼저 위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정원의 W 비자금 추적에 대한 협조 요청

(1) T은 2009. 5.경부터 AC 등에게 W 비자금을 추적할 것을 지시하여, AC은 대북공작국 산하 AY인 AR에게 T으로부터 받은 W의 직계가족 계좌 등 자료를 통해 W 비자금을 추적하는 한편 이를 언론에 제보해 W 비자금의 실체를 표면화할 것을 지시하는 등으로 W 비자금과 관련한 정보활동(일명 'AN' 사업)을 벌여 왔다(2018. 5. 25. 자 AR 증인신문 녹취서 6쪽, 증거기록 7469쪽 이하).

(2) AC은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W 비자금 추적은 국정원의 대북공작업무와는 무관하고, 비자금의 북한 유입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그 실체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었다. 정치적 민감성 때문에 국정원 기획조정실의 통제를 받지 않는 가장사업체 자금²⁾을 동원하였고, 사업계획서 없이 실무진도 모르게 R이 사업비를 지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772, 3774쪽).

(3) T은 공소사실과 같이 2010. 상반기경 국세청 R이던 피고인에게 국정원이 지원하는 자금으로 미국 내 W 비자금을 추적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증거기록 5390-18쪽), 피고인은 S에게 별도로 보고하지 않은 채 AG에게 미국 내 W 비자금에 관해 알아보라고 하였다.

2) 국정원 X 산하 대북공작국은 해외 공작에 활용할 목적으로 해외 현지에 가장사업체(가장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이를 위해 국고에서 지급되는 자금이나 가장체 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국고금관리법 제7조에 따라 직접 사용이 금지되며 국고로 반환되어야 한다. 그런데 T은 AC에게 AN 사업에 위 가장체 수익금을 활용할 것을 지시하였고, 대북공작국은 2010. 6. 14.경 국고금관리법에 위배되는 내용으로 대북공작국 가장체 운영지침을 개정한 후 이를 AN 사업 등에 사용하였다.



(4) AR은 AC과 피고인이 2010. 1.경에 나누었다던 대화 내용을 AC으로부터 구술받아 그 무렵 U 보고용 문건으로 정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2018. 7. 27.자 AR 증인신문 녹취서 5쪽), 그 중 앞부분만 출력된 기록(증거기록 7483쪽, 이하 '이 사건 출력물'이라 한다)³⁾에는 "AC이 'AZ(AD의 처남)에게 비자금 세탁 계좌를 제공한 사람을 증여세 포탈 혐의로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이 'W 비자금의 실체는 규명되어야 하나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자칫 국세청이 보복 조사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고, 선불리 조사에 착수할 경우 W측에 비자금 추적 사실을 알려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라는 기재가 있다.

나) 해외정보원과의 접촉

(1) AG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미국 내 W 비자금에 관하여 알아보던 중 2010. 5. 초순경 뉴욕에 있는 한인보수단체가 AH(W의 2남)의 측근으로 추정되는 BA 등 3명을 미국 국세청(IRS)에 고발하였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고, IRS에 근무하는 해외정보원에게 위 고발 사건에 관한 정보를 넘겨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 보기로 피고인과 논의하였다.

(2) 위 고발 사건은 2006.경부터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고 있던 'BA, AI, BB이 2004.경 미국 뉴욕의 AJ 건물을 매수했는데 그 매수대금의 출처가 W 비자금이다'라는 풍문에서 비롯된 것으로 직접적으로 북한과 관련된 것은 아니었다.

(3) AG은 해외정보원에게 위 고발 사건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며 그 대가로 미화 3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그와 협의한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고, 얼마 후 피

3) 국정원의 사실조회 회신서 등에 따르면 AR은 2010. 1. 18.경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위 문건을 출력한 것으로 보이고, 출력된 문건의 일부가 국정원의 서버에 남게 되어, 검사는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국정원의 정치적 의도를 알고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 제출하였다.



고인은 AG에게 협의한 대로 진행하라고 말하였다.

다) AN 사업(뉴욕 부분)의 진행

(1) 그 후 AC은 AG에게 연락해 "IRS 소속 조사관을 통해 W 비자금 관련 정보를 얻고 미화 30만 달러 정도를 대가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들었는데 맞느냐"고 물었고 AG이 맞다고 확인해주자(AG 증인신문 녹취서 19쪽) AG에게 AT을 소개하며 향후 해외정보원과 관련된 일은 AT를 통해 연락하라고 하였다. AC과 AG은 해외정보원이 돈을 요구하면 국정원이 이를 지급하고 AG은 해외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국정원에 전달하는 것으로 향후 업무 절차를 협의하였다.

(2) 해외정보원은 IRS에 접수된 위 고발 사건을 담당하게 되면서 2010. 5.경부터 2012. 1.경까지 AG에게 그 수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였고, AG은 이를 정리해 피고인에게 보고한 다음 AC, AO에게 전달⁴⁾하는 한편 2010. 5. 23.경부터 해외정보원이 활동자금을 요구하면 피고인에게 알린 다음 국정원에 전해주는 등으로 AN 사업(뉴욕 부분)에 지속적으로 관여하였다.

(3) 이러한 과정에서 해외정보원이 AG에게 제공한 정보는 'BA는 W의 비서를 했던 사람으로 경매에서 은행 담보에 제공된 부동산을 헐값에 낙찰받아 상당한 이익을 보았는데,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던 최초 대출자는 BA와 관련이 있고, 제일은행 뉴욕지점에서 부동산 가치를 부풀려 대출을 받은 것이며, 누군가가 은행이 입은 손해를 보전해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4) 한편 해외정보원은 2011. 11.경 AG에게 계좌번호 10개 정도가 적힌 메모지

4) AG은 이 법정에서 "AC 때는 해외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받으면 중요도를 불문하고 매번 피고인에게 그 내용을 보고했고 그 횟수가 2~3회 정도였다. AO 때에는 얻는 정보의 횟수가 늘어나면서 매번 보고하지는 않고 중요 내용 위주로 보고했다. 해외정보원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A4 용지에 정리해서 7~8번 정도 국정원 측에 전달해줬고, 최소 5~6번은 피고인에게 보여주고 설명했다"고 진술하고 있다(AG 증인신문 녹취서 20쪽).



를 주면서 제일은행 뉴욕지점의 대출금을 누군가 변제하거나 제일은행이 대손상각 처리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알려주었다. 이에 AG은 피고인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국세청 직원들을 통해 제일은행 본점에 위 대출계좌의 상태, 대손처리 상황 등을 알아보려 하였으나 확인에 실패하였다.

(5) IRS가 위 고발 사건의 진위를 결국 확인하지 못한 채 BA와 최초 대출자가 사기죄로 '비공개 기소'(sealed indictment)됨에 따라 해외정보원을 통한 W 비자금 추적 사업은 2012. 1.경 사실상 종료되었다(증거기록 6469쪽).

라) 국정원의 공소장 확보 등 요청

(1) AO은 2012. 3.경 이후에도 AG에게, 해외정보원을 통해 BA 등에 대한 위 비공개 공소장을 구해줄 것과 IRS로 하여금 BA가 미국 검찰에 의해 사기죄로 기소되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미국 내 한국계 언론에 배포하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AG은 BA가 관련 사건인 AI 사건의 참고인이 되면서 미국 법령에 따라 비공개 기소가 된 탓에 그 공소장을 구할 수 없고 IRS의 보도자료 배포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2) 그러나 AO은 AG에게 지속적으로 위 공소장 확보 등을 요청하면서 2012. 5.경 "비자금 관리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처벌됐다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그것을 공개할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관하여 AG은 이 법정에서 "AO의 말을 듣고 그가 2012년 대선 여건 조성에 BA의 공소장을 이용하려 한다고 이해했고, 이를 피고인에게 알렸다. 처음 국정원의 요청을 들었을 때부터 그 동기가 '정치'에 있다고 느꼈는데, AO의 위 말에서 국정원의 구체적인 정치적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AG 증인신문 녹취서 24~25쪽).



3) 구체적 판단

가)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국정원의 W 비자금 추적 사업과 이에 대한 T의 피고인에 대한 요청 내용(특히 T이 피고인에게 W를 지목해 그의 미국 내 비자금을 추적해 달라고 요청하면서도 구체적인 자료나 근거를 제공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사업 진행 과정에서 T의 정치적 의도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나) 그런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이 큰 인사와 관련된 정보 수집 활동은 배후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그러한 이유만으로 이러한 정보활동이 국정원의 직무범위에서 완전히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고, 국가정보원법상 U은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BC), 이러한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의 입장에서는 이를 선뜻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정원이 허용한 한정된 범위의 정보만을 받으며 그 협조 요청에 수동적으로 응한 피고인은 국정원의 내부 의사결정에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이른바 '외부자'의 지위에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T 등과의 공모 하에 국고를 횡령하는 범행을 공동으로 실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T의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는 국정원의 공작 사업에 단순히 협조한 것을 넘어 T의 정치적 의도를 추단케 하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음에도 범행 전반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점이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⁵⁾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5)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 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그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하는바(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이는 이 사건과 같은 횡령행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T의 정치적 의도를 구체적으로 인식함으로써 국정원의 해당 자금 집행이 국고에 손실을 입힌다는 것을 알았다거나 그러한 인식이 가능할 정도의 외부적 정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에서 AN 사업과 관련하여 T과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화를 나누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⁶⁾ 비밀리에 위 사업을 추진하던 T이 먼저 나서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정치적 의도를 알려주었으리라고 보기도 어렵다. 위 사업을 진행하며 국세청측을 접촉한 국정원의 AC, AT, AR 역시 피고인, AG과 AN 사업의 목적과 내용, 구체적인 추진 경과 등을 특별히 공유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AC은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AN 사업이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시작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검찰 제1회 피의자 조사에서 위 진술을 번복한 후 이 법정에까지 W 비자금 추적에 정치적 의도가 없었고, 위 비자금은 대북관련성이 있어 그 추적이 국정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정당한 사업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AG은 W 비자금 추적에 대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정원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다고 진술하고는 있지만, 이는 국정원의 의도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기보다는 내심으로 추측 내지 우려한 정도에 불과하고[이 법정에서 "전직 대통령이라도 탈세 혐의가 발견된다면 조사하는 것이 맞다"라고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AG 증인신문 녹취서 109쪽)], AO이 해외정보원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2012년 대선에 이용하려 한다고 인식한 2012. 5.경에서야 비로소 국정원의 정치적 의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2010. 상반기경 국정원 BD 산하 해외공작국의 BE은 한국계 미국인인 BF로부터 들은 첩보를 국정원에 보고하였는데, 이는 '미국 내 W 비자금은 서부에 6억

6) 이와 관련하여 T은 공판 및 수사 과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미국 내 W 비자금 추적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5,000만 달러, 동부에 7억 달러가 있고, 동부는 BG 전 회장인 BH가, 서부는 BI가 관리한다. 서부 비자금은 BJ, BI, BK, BL 전 회장 BM가 함께 승인해야 출금이 가능한데, 그 중 1억 달러가 미국 페이퍼 컴퍼니, 한국 지주회사, BN(W의 3남)이 운영하는 중국 북경·심양·청도 소재 3개 회사, 중국 연변과기대를 순차로 거쳐 북한 평양과기대에 송금되려 한다"는 내용으로(변호인 제출 증 제1호증), W 비자금의 대북관련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4) 위 BF 첩보와 관련하여 AC은 이 법정에서 "BF의 첩보는 BN, BJ과 관련된 것이고, 해외정보원의 첩보는 AH과 관련된 것이어서 내용상 자금원과 관여자가 다르기는 하나 위 첩보는 동부와 서부에 합계 13억 달러의 W 비자금이 있고, 그 중 일부가 북한으로 유입되려 한다는 내용이므로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 동부와 서부에 W 비자금이 실제로 형성되어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국세청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이해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AC 증인신문 녹취서 40 쪽). 당시 국정원에 수집되어 있던 정보를 종합해 보면 해외정보원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던 때에는 W 비자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고, 위 고발 사건에서 언급된 자금 역시 대북관련성의 의심이 있어 국정원 직원들조차 그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받아들일 여지가 있었다.

(5) AR이 AC의 구술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출력물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은 이른바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고(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044 판결 등 참조), AC의 진술기재 부분은 원진술자인 AC이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진술증거로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위 출력물의 내용을 보더라도 'W측의 차명 계



좌주를 조사해 달라는 AC의 요청을 피고인은 국세청이 정치적 보복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는 취지여서 피고인이 국정원의 요청을 완곡하게 거부하였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고,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의 전체 내용이 남아 있지 않아 온전한 의미를 파악하기도 어렵다.

(6) 그 밖에 피고인이 T의 정치적 의도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여 국정원의 자금 집행으로써 국고에 손실을 입힌다는 것을 알았다거나 그러한 인식이 가능할 정도의 외부적 정황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라) 나아가 피고인은 해외정보원에게 지급되는 국정원 자금이 어떠한 경위로 조성되어 집행되는지를 알지 못하였고, 이에 관하여 국정원과 협의할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았으며, 단지 부하 직원인 AG으로 하여금 국정원에 해외정보원을 소개해 주고 그의 자금 요구를 전달하도록 하는 정도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위 2), 다), (4)항의 제일은행 본점에 대한 확인행위는 국고를 인출, 사용하는 횡령의 실행 행위와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T 등과 공모하여 범행의 전 과정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에 의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위에서 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거나 피고인이 T 등과의 공모 하에 국고에 손실을 입힌다는 것을 알면서 국정원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1) 증거관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공판 및 수사 과정에서의 AO, AR, AS의 각 진술과 AG, T의 각 일부 진술, 수사기관에서의 BO의 진술, 2011. 9. 26.자 AX 사업비 집행계획서(증거기록 7360쪽), 같은 일자 영수증(증거기록 7361쪽) 등이 있고, 그 중 AO, AG, T의 각 진술은 이른바 직접증거에 해당한다.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의 1억 2,000만 원을 전달할 때의 상황에 관하여, AO은 일관되게 "2011. 9. 말경 AQ에서 피고인을 기준으로 우측에 AG이, 좌측에 내가 함께 앉아 있는 자리에서(이하 이 회동을 '3자 대면'이라 한다) 피고인에게 AN 공작 요도에 관하여 설명하고, 소파 오른쪽에 놓아둔 1억 2,000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활동하는 데 쓰시라'고 하면서 건넸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AG은 검찰의 참고인 조사와 제1회 피의자 조사에서는 "3자 대면도 없었고, AO이 피고인에게 위 요도에 관하여 설명하지도, 활동자금을 건네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이하 'AG의 종전 진술'이라 한다) 제2회 피의자 조사에서 이를 반복하여 위 AO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T은 대체로 일관하여 "해외정보원에게 지원하는 자금과 별개로 피고인으로부터 역외탈세 조사에 관한 예산 지원을 요청받아 AC이나 AO에게 지원해 주라고 지시한 기억이 있는데, AO이 전달했다고 하면 맞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의 사실관계에 관한 주된 쟁점은 AO, AG, T의 위 각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지에 모아진다.

2) 관련 법리

금전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전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



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전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1681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AO, AG, T의 위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AO 진술의 신빙성 여하

(1) 피고인을 방문한 경위와 횡수

(가) AO은 검찰 제3회 피의자 조사에서 피고인을 찾아간 경위에 관하여 "2011. 9.경 T에게 BF가 제공한 1억 달러 수표 등의 자금원을 IRS가 확인할 수 있다고 보고했더니 T이 1~2주 후에 '피고인을 만나 설명한 후 필요한 도움을 받고 10만 달러 정도를 지원해주라'고 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5845쪽), AG과의 대질조사에서도 "3자 대면시 W 비자금의 흐름을 설명하면서 우선적으로 IRS를 통해 1억 달러



수표의 계좌정보를 알아봐 줄 것을 요청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435쪽). 그러나 AO은 그 후 피고인과의 대질조사에서 "3자 대면에서 수표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104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을 찾아간 경위를 설명하면서 위 수표에 관하여 따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위 1억 달러 수표는 AO이 T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IRS를 거론하게 된 단초로서 T이 AO에게 국세청을 찾아가 협조를 구하라고 지시한 계기가 된 것인데, 위와 같은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또한 AO은 검찰에서 강한 어조로 AQ에서 피고인을 만난 것은 한 번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AG 역시 AO이 피고인을 한 번 만나러 왔었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런데 AO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을 만난 것은 2011. 7.경과 2011. 9. 말경의 두 번이다. 2011. 7.경 AN 사업을 맡게 되어 AR을 시켜 요도를 만든 다음 T에게 보고했더니 T이 그 내용을 국세청에 알려주라며 바로 피고인에게 전화해 약속을 잡아주어 만났고, 한두 달 지난 뒤 LA 첩망(BF)이 추가로 제공한 정보를 요도에 업데이트한 다음 같은 해 9.경에 T에게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는데, 2주 후에 T이 국세청에 도움을 구하고 활동자금을 전달하라고 지시하여 만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을 변경하여(AO 증인신문 녹취서 18쪽) 피고인을 방문한 횟수에 관하여도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 AG의 진술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다) AO의 위 법정진술은 AN 공작 요도에 BF로부터 추가로 입수한 중요 정보를 반영하게 된 것을 계기로 T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을 재방문하였다는 것인데, 위 요도를 직접 작성하고 관리한 AR은 이 법정에서 "BF와 해외정보원 부분은 내가 개입하지 않아 특별히 업데이트한 것이 없고, 요도는 소소하게 한두 번 업데이트하였다"라



고 진술하고 있는 점(2018. 5. 25.자 AR 증인신문 녹취서 33, 68쪽), BF는 AO이 AN 사업을 인수하기 전에 국정원에 정보 제공의 대가로 미화 10만 달러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어 추가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AT 증인신문 녹취서 9쪽)⁷⁾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을 찾아간 경위 부분도 믿기 어렵고,⁸⁾ AR이 2011. 7. 말경 작성한 보고서(증거기록 7485쪽, 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고 한다)에서 'AO이 2011. 7. 28.경 피고인을 만났다'는 내용을 보고 이에 맞추어 진술을 변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라) 한편 AO의 진술은 피고인이 먼저 T에게 자신의 활동자금을 요구했다는 취지이나, 앞서 본 W 비자금 추적 과정에서의 국정원과 국세청의 관계, 피고인의 역할과 관여 정도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이 T에게 그러한 요구를 할 만한 위치에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2) 3자 대면의 시점과 당시 상황

(가) AO은 AX 사업비 집행내역에서 2011. 9. 26.에 1억 2,000만 원이 집행된 것을 보고 피고인을 2011. 9. 말경 방문하였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3자 대면을 한 일자와 시각을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고, AG 역시 AO이 피고인을 찾아온 시기와 일자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2011. 여름경 AO이 찾아와 A4 용지 2장을 펼쳐놓고 무언가를 설명한 기억이 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보고서의 내용에 부합하고, AN 공작 요도 역시 2011. 여름경 완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AO이 위 요도를 T에게 보고하고 나서 그의 지시에 따라 2011. 7. 28. 피고

7) AN 사업에 대한 국정원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1. 9.경 BF가 국정원에 정보를 제공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증거기록 7435쪽 이하).

8) AO은 3자 대면에서 국세청에 협조를 요청한 이후에 국정원과 국세청 사이에 어떠한 내용의 협업이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도 언급이 없다.



인에게도 알리기 위해 국세청을 방문하였을 가능성이 높다(증거기록 7485쪽).⁹⁾

(나) 또한 AO(인원 및 차량)의 국정원 출입 내역, AG의 출장 일정, AO의 개인카드와 피고인의 법인카드 결제내역 등으로 볼 때 2011. 9. 말경 AO의 국세청 방문이 가능했던 일시는 2011. 9. 29. 12:59부터 14:29까지(90분간) 뿐인데, AO은 그날 12:59경 양재동 소재 식당에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14:29경 국정원에 돌아온 것으로 확인된다(변호인 제출 증 제10, 37호증). AO의 관용차량이 버스전용차로로 운행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국정원의 사실조회 회신서 참조)을 감안하더라도 위 90분은 AO이 양재동에서 국세청이 있는 종로구 수송동까지 가서 피고인에게 AN공작 요도로 W 비자금 추적 사업에 관해 설명하고 활동자금을 건네준 다음 국정원이 있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으로 복귀하기에는 매우 빠듯한 시간이다. 또한 AO의 운전원인 BO은 "AO의 차량을 운전해 국세청 건물에 갔던 기억은 없고, 그 바로 옆의 여권과 건물 쪽으로 1~2회 갔던 기억은 있으며, 도로에서 AO을 기다렸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5963쪽), 2011. 9. 29.에는 비가 많이 왔던 터라(변호인 제출 증 제39호증) 그날 국세청을 방문하였다면 차량으로 현관 바로 앞까지 진입하였을 것으로 보여 AO이 2011. 9. 29.에 피고인을 방문한 것이 사실인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

(3) 허위 진술의 동기

(가) AO은 2018. 1. 19. 검찰 제1회 피의자 조사에서 그가 집행한 가장체 수익금[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5,000만 원), 11(1억 2,000만 원), 12(1억 1,500만 원)]의 사용처에 관한 소명을 요구받자 위 1억 2,000만 원은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

9) 이와 관련하여 AR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보고서에 'AO이 피고인과 AG을 개별 접촉하였다'고 적혀 있는 것으로 볼 때 AO이 피고인과 AG을 따로 만났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2018. 7. 27.자 AR 증인신문 녹취서 16쪽) 이는 다분히 추론에 불과하여 위 보고서 기재만으로 당시 3자 대면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였고, 이후 위 자금 등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공판이 진행 중이다.

(나) AO은 검찰 조사 직전인 2017. 12. 29.경 AG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AG에게 위 1억 1,500만 원을 전달하였는지만을 확인하였고, 2018. 1. 9.경 AG을 만나 위 1억 1,500만 원을 재차 확인하면서 3자 대면을 언급하였으나 위 1억 2,000만 원에 관하여는 따로 확인하지 않았다. 그런데 AO은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와 2018. 1. 24.경 다시 AG을 찾아가 3자 대면에서 피고인에게 1억 2,000만 원을 건넸다며 피고인을 통해 이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다음날 AG에게 전화하여 AG이 위 5,000만 원도 전달받지 않았느냐고 물어보기도 하였다[AG의 법정진술(AG 증인신문 녹취서 81~87쪽)].¹⁰⁾

(다) 이러한 진술 과정으로 볼 때 AO은 최초에는 위 1억 2,000만 원 부분을 특별히 신경쓰지 않고 있다가 검찰 조사에서 소명을 요구받자 3자 대면이 있었던 기억을 떠올려 피고인에게 위 1억 2,0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이를 계속 유지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나) AG 진술의 신빙성 여하

(1) AG은 이 법정에서 "3자 대면 전후의 경위는 기억나지 않으나 AO이 피고인과 자신에게 AN 공작 요도에 관해 설명했던 장면, AO이 오른쪽 아래의 쇼핑백을 가리키며 '활동자금'이라는 식으로 말했던 장면이 기억난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AG 증인신문 녹취서 116쪽), 자신의 종전 진술도 기억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며 "기억이 불확실했는데 피고인이 아니라고 하니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했고, 다시 검사로부터 '피

10) 그런데 AG은 검찰 제2회 피의자 조사에서 종전 진술을 변경하면서, AO의 확인 경위에 관하여도 "AO으로부터 2018. 1. 9.과 같은 달 24.에 위 1억 1,500만 원과 1억 2,000만 원에 대한 확인을 요청받았을 때 나와 피고인이 받은 것이 맞다고 확인해 주었다"고 AO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을 변경하였다(증거기록 6495쪽), 이 법정에서 다시 종전 진술에서와 같은 내용으로 AO의 확인 경위에 관한 진술을 변경하여 일관성이 부족하다.



고인도 대면을 인정했다'는 말을 듣고 AO과 대질을 하다 보니 '만난 것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3자 대면 당시의 상황이 어렴풋이 기억났다"라고 진술하고 있다(AG 증인신문 녹취서 121~122쪽).

(2) AG은 3자 대면이 있던 날 국세청에서 AO을 영접한 상황, 그와 함께 AQ까지 이동한 동선과 소요 시간, 3자 대면 후 AO과 헤어지기까지의 과정, 이후 AO의 협조 요청에 대하여 국세청이 취한 조치 등 3자 대면 전후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관련자들의 진술에 따라 말을 바꾸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 만약 AO이 피고인에게 W 비자금 추적과 관련하여 직접 '활동자금'을 건넸다면, 해외정보원과 접촉하며 정보를 수령하는 등의 실무를 수행해 온 AG으로서 자신이 아닌 피고인이 국정원 자금을 받는 것에 의구심을 가질 만한 상황이고, 관점에 따라서는 평소 부정부패를 경계하자고 강조해 오던 피고인이(AG 증인신문 녹취서 11~12쪽, BP 증인신문 녹취서 5, 18쪽) 자신의 목전에서 성격이 불분명한 자금을 수수하는 이례적인 경험을 한 것인데도 이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4) 또한 AO은 2018. 1. 24.경 AG을 만난 자리와 이후 AG과의 대질 조사에서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상황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AG이 AO의 진술 내용에 반복적으로 노출됨으로써 불명확했던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T 진술의 신빙성 여하

T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W 비자금 추적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하는 등 그 진술 대부분이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객관적인 자료에 배치되어 그 자체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 부분 진술도 AO의 진술에 맞추어 'AO의 말이 맞을 것이다'는 식의 추측성에 가까워 증거가치가 크지 않다.

4) 소결론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1568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의 직접증거인 AO, AG, T의 위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의연 _____

 판사 김영호 _____

 판사 이진규 _____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범행 일시	국고손실액	관여자(국정원 / 국세청)	비고
1	2010. 5. 20.경	35,000,000원	T, AC / AG	
2	2010. 5. 28.경	35,000,000원	T, AC / AG	
3	2010. 5. 31.경	15,000,000원	T, AC / AG	
4	2010. 6. 14.경	50,000,000원	T, AC / AG	
5	2010. 7. 22.경	20,000 USD	T, AC / AG	
6	2010. 8. 6.경	6,000 USD	T, AC / AG	
7	2010. 9. 13.경	115,000,000원	T, AW / AG	
8	2010. 9. 24.경	10,000 USD	T, AW / AG	
9	2010. 10. 14.경	11,000 USD	T, AW / AG	
10	2011. 5. 23.경	50,000,000원	T, AO / AG	
11	2011. 9. 26.경	120,000,000원	T, AO	
12	2012. 3. 26.경	115,000,000원	T, AO / AG	
합계		535,000,000원 및 47,000 USD		

끝.